

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

접수번호	농업경영체 등록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60일					
신 청 인	성명	주민등록번호							
	주소	자택전화							
		휴대전화							
		전자우편 주소							
농장현황	농장명	사업자등록번호							
	농장전화	대	성명						
	팩스번호		생년월일						
	설립일 년 월 일	표	전화번호						
	구성원수 명		전자우편 주소						
친환경인증 최초 인증일 (인증번호)		안전관리인증농장 최초 인증일		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수급횟수	회				
축 종	인증	농 장 소 재 지				사육 두수	인증 두수	예상생산량 (단위)	예상금액 (천원)
	종류	시·군·구	읍·면	리·동	지번				
합 계									
입금계좌	(은행명)	(예금주)	(계좌번호)						
「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신청하며,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지급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(동의하는 경우 []에 "√"표시)합니다.									
[] 직접지불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동의합니다.									
[] 직접지불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.									
※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·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(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), 농림축산식품부,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의 개인정보를 보유·이용할 수 있습니다.									
※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·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,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용자·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									
년 월 일									
신청인 (서명 또는 날인)									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									
첨부서류	1. 안전관리인증농장 인증서 사본 1부 2. 「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 1부								수수료 없음

처 리 절 차

신청서 작성	→	접 수	→	검토 및 확인	→	지급대상자 선정 통보
신청인				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		